

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의 미래

서울연구원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안내

1. 관련 근거

- 근로기준법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및 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

2. 위 관련, 2019년 7월 16일부터 「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」가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권이 존중되는 연구원 업무 환경 조성에 전 직원의 협조를 요청합니다.

가. 직장 내 괴롭힘이란

- 1) 정의: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- 2) 예시: 폭행 및 협박, 폭언·욕설·험담, 사적 용무 지시, 집단 따돌림 및 의도적 업무 배제,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, 과도한 업무 부여, 원활한 업무 수행 방해 행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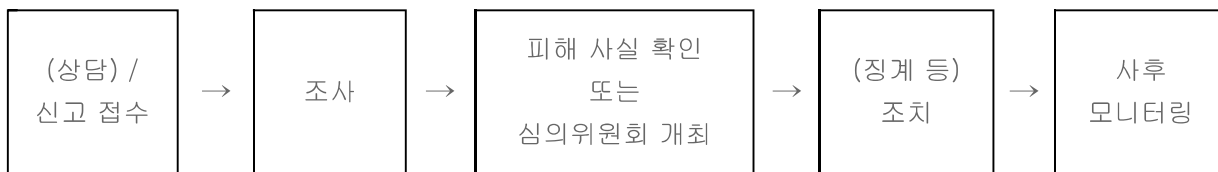
※ 보다 상세한 판단 기준 및 사례는 붙임 1. 파일 참조

나.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원 내 활용 가능한 제도

- 서울연구원 성평등·인권센터 및 고충상담원과의 상담 또는 신고 접수
- 원 내 포털사이트 우측 하단 '사이버 신고창구' 이용 (익명 제보 가능)

다.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

- 서울연구원 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 지침에 따라 처리



라.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기본 지침

- 1) 업무 시 상호 존칭 및 존중 언어 사용
- 2) 부서 내 의사소통 방식 및 의사결정 구조 점검
- 3)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중단시키기

4) 성평등 · 인권 교육 적극 참여 및 평소 인권 존중 분위기 조성에 힘쓰기

붙임 1.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· 대응 매뉴얼 1부. 끝.

서울연구원장

수신자 서울연구원장, 부원장, 감사실장, 연구기획실장, 전략연구실장, 소통협력팀장, 경영지원팀장, 인사복지팀장, 재무팀장, 도시사회연구실장, 시민경제연구실장, 도시경영연구실장, 교통시스템연구실장, 안전환경연구실장, 도시공간연구실장, 도시정보센터장, 도시외교연구센터장,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

담당	김하나B	연구책임자	반정화	부원장	07/16
					김경혜

협조자

시행 기획조정본부-280(2019.07.16)

우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(서초동 391) 서울연구원 / 홈페이지 <http://www.si.re.kr>

전화 02-2149-1045 전승 02-2149-1019 / 이메일 gskkhana@si.re.kr / 공개